의안번호	제 816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25일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발 의 자 : 김영주, 박성원, 최경천, 김국기,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1. 제안 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작된 원격수업이 학교 교육활동의 한 축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원격수업이 대면수업과 함께 학교 수업의 한 형태로 정착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1세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미래 교육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실태조사(안 제6조)

바. 취약계층 지원(안 제7조)

사. 교원 역량강화(안 제8조)

아.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안 제9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학교혁신과, 미래인재과

라. 입법예고: 2021.8.19.(목) ~ 2021.8.24.(화)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양질의 원격수업 운영과 학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 방안
3. 원격수업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
5.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운영실태 및 성과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격수업 지원 재정확보 방안
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운영
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보급
3. 원격수업 컨설팅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보급
5.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6. 교원 원격수업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7. 원격수업 관련 학생·학부모 상담
8. 그 밖에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취약계층 지원) 교육감은 저소득층 · 다문화 · 다자녀 ·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역량강화)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컨설팅, 원격수업 관련 교원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및 원격수업 관련 연구기관 · 단체 ·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2. 3. 21.]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10. 30.>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9. 9.]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충청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에 따라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